제13회 차관회의 회의록

I.**일** 从: 2024. 3. 28.(목), 10:00 ~ 10:18

Ⅱ. **장** 소: 정부세종 ⇔ 서울청사 국무회의실(영상)

Ⅲ. 상정안건 : 총 16건

□ 대통령령안 15건, 부처보고 1건

Ⅳ. 참석자 현황

□ 구성원

주재 : 국무조정실장(세종)							
국 무 조 정 실 장	방기선	0	세종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병환 〇			
교 육 부 차 관	오석환	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 이 창 윤 △ 세종			
외교부제1차관	김홍균	0		통 일 부 차 관 문승현 △			
법 무 부 차 관	심우정	0		국 방 부 차 관 김선호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0	세종	국 가 보 훈 부 차 관 이희완 〇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전병극	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한 훈 ○ 세종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0		보건복지부제1차관 이기일 〇			
환 경 부 차 관	임상준	0		고 용 노 동 부 차 관 이성희 〇			
여성가족부차관	신영숙	Δ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 세종			
해양수산부차관	송명달	0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오기웅 〇 세종			
대리참석(△)]획3	돈정 실	보(나주범) 과학술정보통신부연권발정책실정(노경원) 실장(황정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김수삼) 성실장(최보근) 여성기주부청소간(주정책실장(황윤정)			
비고							

□ 배석자

방송통신	위원회·	부위원	장	이상인	0		국무조정	실 국두	11차장	박구연	0	세종
공정거래	위원회·	부위원	[장	조홍선	Δ	세종	금융위원	회부의	위원장	김소영	Δ	
국민권익	위원회·	부위원	장	정승윤	Δ	세종	개인정보보호	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	Δ	
행 정 재난안	안 전관리	전 본부	부장	이한경	Δ	세종	서 울 행 정 제	특 ^및 1 부	별 시 시 장	_	×	
감사원				-	×		인 사 혁	신 처	차 장	이인호	0	세종
법제	처	차	장	김창범	0	세종	식품의약	품안전	처차장	김유미	0	
대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송상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윤수) 대리참석(△)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부위원장(박종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정렬) 행정전부재권전관본부인전해당정책실장(이용철)											
刊		고		심종섭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배석(세종)								
간		사		행정안전]부 의	의정두	담당관 김/	<u></u> 상춘(세	(종)			

(10시 개회)

□ 국민의례(사회 : 의정담당관)

국기에 대한 경례

□개일

국무조정실장께서 제13회 차관회의 개의를 선포함.

□ 모두 말씀

오늘은 1분기 마지막 차관회의임. 1월부터 스물네 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국민들과 소통하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음. 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님 주재로 그간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할 예정임. 각 부처에서는 주요 성과사례와 후속 조치 추진 상황,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면밀하게 정리하여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단순히 정책 발표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며, 국민들께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후속 조치 점검 회의와 민생현장 행보 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챙기는 정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가 끝날 때까지 민생토론회는 잠시 중단될 예정이지만, 2분기에도 물가안정 등 민생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은 분명한 사실임. 각 부처에서는 선거가 끝나면 민생토론회와 민생현장 행보를 더욱 확대하여,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람.

최근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관계부처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할인지원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면서 사과 등 농축산물 가격이 다소 하락하고 있지만, 방울토마토 등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품목의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기재부 등 관계부처 에서는 물가에 대한 일일 점검을 강화하면서 상승 품목에 대한 물가 관리에 지속 하여 총력을 다하는 한편, 정부 대책을 몰라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 물가 대책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또한, 일부 발언을 왜곡해 정부가 물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팩트에 기반해서 정부가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음을 국민들께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최근 잇단 어선 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여러 가지 기상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3월부터 '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해 집중 관리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대책에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철저하게 살피고 점검할 필요가 있음.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업인·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 무리한 조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최근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람.

지난주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공연장에서 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총격·방화 테러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음. 최근 우리나라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개막전에 '공갈 폭탄 테러' 협박도 있었음.

대테러기관 간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테러범의 입국을 원천 차단하고, 테러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총기류 등 취약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기해 주시기 바람. 특히, 해외 여행객들과 재외국민들이 해외에서 테러 위험에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위험지역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국민들께 필요한안전 정보와 행동 요령을 적기에 정확하게 제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최근 유명인을 사칭하여 투자자를 유인하고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사기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관계기관에서 불법금융광고에 대한 단속·차단조치와 더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으나, 급증하는 사칭 광고를 사후적으로 추적·심의하는데 시일이 소요되고, 적발 시에도 단순사칭 광고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금융위, 방통위 등관계부처는 적발된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차단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함께 신속 심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사칭 광고 유포와 관련된 법령을 면밀히 재정비하여 유명인을 앞세운 금융투자 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살펴 주시기 바람.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음.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기 위해 공직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임. 특히, 적극적으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게 아니더라도 SNS 등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공유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클릭하는 행위 등 소극적 의사 표현도 선거 중립의무 위반인 만큼, 공직자들이 잘 몰라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철저히 지도·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의안심의**(사회 : 국무조정실장)

1.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08호, 법무부]
2.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09호, 법무부]
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10호, 법무부]

o 제안설명: 법무부차관 심우정

ㅇ 주요내용

▶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총 보수의 1000분의 25만큼 인상·조정됨에 따라 이를 검사의 봉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처벌 근거 조문이 이동한 것에 맞추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업무범위를 민원 안내·상담뿐만 아니라 민원에 관한 통역·번역 지원까지 확대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개정(법률제19742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려는 경우 인력, 시설과 장비 및 민원 안내·상담과 통역·번역 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토 의 : 이견 없음

○ 일 결: 제808호∼제810호 각각 원안 의결

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11호, 국방부]

○ **제안설명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김수삼

ㅇ 주요내용

전역 후 사회 진출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의 경우에만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등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5년 미만의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 중 전역예정일이 1년 이내인 군인에게도 복무기간에 따라 5일이내 등의 범위에서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토 의 : 이견 없음

5.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12호, 행정안전부(국가안보실)]

o 제안설명: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ㅇ 주요내용

경제·신기술 및 사이버 안보 분야에 대한 국가안보 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에 제3차장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안보실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원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에 국가안보실 제3차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토 의: 이견 없음의 결: 원안 의결

6.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13호, 산업통상자원부]

o 제안설명: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최남호

ㅇ 주요내용

국내 수소산업 관련 기업의 낮은 집적 수준을 고려하여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으로 수소산업 관련 사업자 간에 상호연계하여 산업 발전을 향상시키는 집적화를 이루고 있는 지역 외에 그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육성과 성장을 촉진하려는 것임.

토 의: 이견 없음의 결: 원안 의결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14호, 국토교통부]				
8.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15호, 국토교통부]				
9.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16호, 국토교통부]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병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17호, 국토교통부]				
1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18호, 국토교통부]				

1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19호, 국토교통부]				
13.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20호, 국토교통부]				
1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21호, 국토교통부]				
1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안 제822호, 국토교통부]				

o 제안설명: 국토교통부제1차관 진현환

ㅇ 주요내용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을 제외한 도시공원의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하편,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으로서 적재물을 포함한 실외이동로봇의 질량이 100킬로그램 이하이고 시속 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차도 외 장소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의 효용을 증진하고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범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 공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인의 금융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법률 제20047호, 2024. 1. 16. 공포, 4. 17. 시행)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또는 전세계약의 종료에 따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정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는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정보 등을 제공받는 데 필요한 동의서면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도시보증

공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의 거주기간 요건 완화(안 제11조제3항)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함.

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 점검 수행 기관 구체화 (안 제23조제11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한국 부동산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사항 마련(안 제91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층간소음 피해 및 분쟁조정 현황과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함.

- 라. 공동주택과 부대시설·복리시설에 대한 행위 허가·신고에 관한 규제 완화 (안 별표 3)
 - 1) 종전에는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는 그 면적 중 '2분의 1'까지만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면적의 '4분의 3'까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
 - 2) 종전에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의 일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년 동안 어린이집 설치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어린이집 폐지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입주자 동의 외에 시·

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어린이집의 시설 전부를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물막이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면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은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상을 위한 기초 조사를 충실하게 하고, 작성이 의무화된 기본조사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재결신청서에 토지 등에 관한 공부(公簿)의 조사 결과 및 현장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대인이 월세를 관리비로 전가함에 따른 계약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줄이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확인하여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에 관한 사항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정보 제시 의무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에 관한 사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을 추가하여 공공주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완화된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주차장에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산정할 때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해 설치한 주차단위구획 수의 3.5배수에 해당하는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임.

▶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통행정기관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통안전 전문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74호, 2023. 4. 18. 공포,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국토교통부나 시·도 소속의 공무원 교육기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의 안전 운행 여부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하여 운행기록을 주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운행기록장치 장착의무자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추가하되, 해당 사업자들은 최대적재량이 2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대형 특수자동차의 운행기록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험물의 철도 운송에 따른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의 방법, 절차 등을 따르지 않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를 받지 않고 포장 및 용기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및 종사자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위험물취급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철도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9392호, 2023. 4. 18. 공포,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각각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위반 시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체계적 활용을 위하여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040호, 2024. 1. 16. 공포, 4. 17. 시행)됨에 따라,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에 포함되어야할 자료 또는 정보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받은 광역버스 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및 광역버스의 운행·이용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 정하고,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도록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ㅇ토 의:

■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작년 2월 대책이 마련된 이후에도 전세 사기 사례가 계속 새롭게 발생하고 있지만, 구제되었다는 이야기는 별로 들리지 않는 상황임.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등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하거나 국민들께 알려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음.

□ 부처보고

1. 2024년 공공 갈등관리 추진 계획<대외주의>

▶ 고: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 심종섭

ㅇ토 의:

■ 국무조정실장 방기선 갈등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 만큼, 각 부처는 다른 부처들과의 협업 문제나 NGO 협업 문제, 갈등 조정 문제 등에 대해 사전에 국무조정실과 협업하여 갈등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림.

□ 산 회

국무조정실장께서 제13회 차관회의 산회를 선포함.

(10시 18분 산회)

- ▶ 차관회의 회의록은「차관회의 규정」제12조 및「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라 발언요지 등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내용: 회의명칭, 개최기관,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 포함
- ▶ 차관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홈페이지(mois.go.kr)'에 공개되고 있습니다.